

국회의원(박찬대 등 10인) 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1901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주진우 · 권성동 · 유용원
박수영 · 조배숙 · 김기현
강명구 · 정성국 · 윤한홍
박준태 의원(10인)

주 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며, 동법 제25조에 따라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소속 국회의원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전용기 및 위 TF 발족을 옹호하고 지원한 같은 당 지도부 박찬대·정청래·김병기 등 10인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부의 최종심 판결까지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하며, 사실상 외환 행위를 옹호함으로써 국가의 법치주의 질서와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위 의원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중대하고 현저히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이들이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의원들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

제안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 박찬대 등 10인의 제명을 촉구함.

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비밀리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확정하였음.

나. 위 행위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UN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외교·안보 고립을 자초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함.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구성하여,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을 사실상 부정하고 이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압력을 통해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부지사의 중대 범죄를 사실상 옹호하는 위 국회의원들의 언행은 사실상 외환 행위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라. 특히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족 이후, 국민을 호도하고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왜곡된 발언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음.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날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이하 TF 위원들 또한 사법부의 최종심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며 수사기관인 검찰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마. 박찬대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수사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음.

바.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 당시의 직위를 남용하여 검찰 수사를

근거 없이 폄훼하고 정당한 수사를 ‘직권남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음. 또한 “이화영 증인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국민을 호도하였으나, 법원에서 해당 회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음.

사. 김병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이끌어내고, 검찰 개혁의 물꼬를 터줄 것”이라고 발언하며, TF의 발족을 옹호·지원하였고, 검찰의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의 언행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에 해당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 및 「국회법」 제24조·제2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 이에 국회의 권위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